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 연구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경기복지재단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북부장애행가족지원센터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경기북부장애행가족지원센터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 구 진

■ 연구기관 - 경기복지재단

■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공동연구 - 이송희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제 출 문

경기북부장애탊가족지원센터장 귀하

경기북부장애탊가족지원센터로부터 의뢰받은 경기도 장애인가
족지원센터 운영 모형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4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요약

□ 연구목적

-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른 운영 모형(안) 마련

□ 연구내용방법

- 경기도 가족지원사업 현황 파악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양적 조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현장, 학계,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등) 자문회의 실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장애인 부모 대상 인터뷰 실시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시군)의 실질적 운영 모형(안) 마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조사

- 조사개요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양적조사)
 -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 센터(북부 2개, 남부 6개)를 비롯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 및 실태 현황 조사 실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족) 인터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 6명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 분석결과
 - 기관일반현황
 - 기관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7%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68.3%, 장애인단체 23.2%,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1.2%로 나타남
 -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기관소재지를 살펴보면, 남부인 경우가 75.7%, 북부 24.3%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설립된 경우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2010년에 설립된 경우는 33.3%, 2000년~2005년에 설립된 경우는 17.9%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의 상근·계약·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평균 3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37.4%, 없는 경우는 62.6%로 나타나,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 평균 3.1명의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전체 업무량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최소 0%에서 최대 8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8.9%정도라고 응답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주 이용대상을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 50.5%, 2순위는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뇌병변) 42.1%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현황
-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별로 제공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인식개선 사업(5.8%)’, 사례관리사업 중 ‘장애인가족 상담 사업(5.6%)’, 가족역량강화 사업 중 ‘부모교육(5.5%)’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중 ‘사례회의 및 교육(5.2%)’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가족역량강화 중 ‘장애인당사자 멘토링 (0.7%)’,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0.8%)’와 ‘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 (1.0%)’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돌봄지원과 관련하여, 단기(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1.8%, 주·야간 돌봄 서비스 2.2%, 방과 후 교육/치료서비스의 경우 3.4%의 정도로 나타남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 사업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돌봄지원, 가족휴식(여가)지원, 교육 및 연구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내용별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업의 경우는, 먼저 장애당사자들 대상으로 한 부부 프로그램 6.1%,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프로그램도 3.8%, 비장애형제 지

원프로그램 6.4%, 부모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도 3.8%, 가족나들이 5.4%, 가족캠프 10.0%, 동아리 활동지원 13.4%,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4.4%, 법률지원 7.3%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1순위는 가족역량강화 사업, 2순위는 사례관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다른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다는 경우가 61.4%, 없다는 경우는 38.6%인 것으로 나타남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연계 및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의뢰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66.7%), 지역 내 의뢰 및 연계할 자원이 없어서(14.5%)로 나타났으며,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61.7%), 우리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29.6%) 연계 및 의뢰한 것으로 나타남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연계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 12.6%, 장애인복지관 10.6%,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의료기관은 각각 6.7%의 순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6%, 주민센터 등 관공서 6.6%, 의료기관 6.4%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우선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1순위 아동기 28.4%, 2순위 영유아기 22.7%로 나타남
 -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유형은 1순위 발달장애인 (48.6%), 2순위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장애(25.2%)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1순위 인력의 전문성 강화(26.3%), 2순위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 (25.5%)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중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몰랐다 또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조사연구사

업(80.0%), 교육사업(72.0%),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70.8%), 장애인 가족지원(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70.8%), 지역사회조직사업(60.4%)에서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하였음. 이에 반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16.7%),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13.0%),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7%),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8.3%)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조직사업(75.0%),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75.0%)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사업 등에서 ‘그저 그렇다(50.0%)’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평균 6.9명을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9.2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중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두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예. 4개 권역)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56.0%),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복지 서비스 격차(56.0%),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56.0%),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수의 증가(52.0%)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역시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75.0%),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50.0%)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이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66.7%), 장애인종합복지관(68.2%), 장애인중별복지관(83.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66.7%) 모두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

율(75.0%)이 높게 나타나 다른 기관 응답자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지역센터가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문성 강화(46.4%)’, ‘다양한 욕구에 대응(25.0%)’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응(55.6%)’,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전문성 강화(53.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성 강화(46.7%)’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 각각 33.3%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
- 시·군 지역센터가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32.1%)’, ‘관리의 효율성(29.5%)’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 각각 41.2%, 36.7%, 21.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군 지역센터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8.9%), 가족역량강화사업(88.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8.9%), 지역사회조직사업(66.7%)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광역센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역량강화사업(66.7%)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에서 각각 66.7%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군 지역센터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필요정도에 대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역량강화사업(70.65),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64.7%)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반해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 단위 행사에서는 62.2%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시·군 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는 평균 8.0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군 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평균 8.0명)은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평균 9.2명)과 비교해 볼 때 1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광역·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안)

구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독립형’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분리)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 위탁형 - 민간 위탁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독 독립적으로 운영
관련 법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사업내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장애인 가족 지원) - 2017년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제30조 2, 장애인 가족 지원)’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례 등을 통해 사업
설립배경 및 목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 즉,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됨.
대상	·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 및 연계하도록 함.
추진체계	· 경기도 · 시·도 및 시·군 · 수탁기관
재정지원 (재원 조달 방식)	· 경기도, 시·군 예산 지원
조직 및 인력구성	· 센터장의 총괄아래 총 3개팀으로 운영 ① 가족상담사업팀 ② 가족지원 및 기능강화사업팀 ③ 인식개선 및 교육연구 사업팀 (인식개선사업, 교육연구·기타사업 2종으로 분류 가능)
인력구성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인력(발달장애인 사업 제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함 · 센터장 1인, 팀장 2명(운영지원팀 1명 센터장 겸직 가능하므로 제외), 팀원 4명으로 총 7명의 인력을 제안함
사업내용	·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 연구(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업, 장애인가족 대상 가족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광역센터와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주로 직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구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독립형’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분리)
장·단점	· 장점 –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자율성을 발휘하기에 용이 – 현 법률 및 조례 체계에서 운용 가능 · 단점 –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할 때보다 관리운영비 상승할 수 있음 – 업무의 연계 및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장애인가족지원사업 / 7	
		1. 중앙정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7
		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0
III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 15	
		1. 조사개요	15
		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분석	18
		3. 이용자 인터뷰 분석	51
		4. 소결	61
IV		경기도 광역·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안) / 69	
		1. 광역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모형(안)	69
		2.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독립적 운영(독립형)	74
V		제언 / 83	
		참고문헌 / 85	
		부록 / 87	

<표 II-1> 정부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7
<표 II-2>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10
<표 II-3>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10
<표 III-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에 관한 실태조사(설문문항)	15
<표 III-2> 심층인터뷰 참여자 특징	17
<표 III-3> 초점집단인터뷰 면접질문 내용	17
<표 III-4> 기관유형	18
<표 III-5> 장애인복지관 유형	18
<표 III-6> 운영주체	19
<표 III-7> 기관소재지	19
<표 III-8> 설립시기	20
<표 III-9> 전체 직원수	20
<표 III-10>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유무	21
<표 III-11> 전담인력 수(n=34)	21
<표 III-12> 전체 업무량 중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업무 차지 비중(n=55)	21
<표 III-13>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주 이용대상	22
<표 III-15>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내용	23
<표 III-16> 현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내용별 필요도	25
<표 III-17>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27
<표 III-18>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경험 여부	28
<표 III-19>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	28
<표 III-20>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를 하는 이유	29
<표 III-21> 주로 연계하는 기관	29
<표 III-22> 향후 사업 위해 연계가 필요한 기관	31
<표 III-23> 생애주기 중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	32
<표 III-24>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 유형	32
<표 III-25>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 유형	33

<표 III-26>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34
<표 III-27>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전체	35
<표 III-28>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장애인가족지원센터	36
<표 III-29>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장애인종합복지관	37
<표 III-30>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수(센터장 제외)	38
<표 III-31>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 적정 설치 수	38
<표 III-32>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 _전체	39
<표 III-33>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 _장애인가족지원센터	40
<표 III-34>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 _장애인종합복지관	40
<표 III-35> 시·군 지역센터 운영 방안	42
<표 III-36> 시·군 지역센터 운영 방안(단독운영) 응답 이유	43
<표 III-37> 시·군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내용의 필요정도(단독운영의 경우)_전체	44
<표 III-38> 시·군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내용의 필요정도(단독운영의 경우)_장애인가족지원센터 ..	45
<표 III-39> 시·군 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수(센터장 제외)	46
<표 III-40> 시·군 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시·군센터 적정 설치 수	47
<표 III-41> 응답자 일반특성 : 성별	49
<표 III-42> 응답자 일반특성 : 연령대	49
<표 III-43> 응답자 일반특성 : 학력	49
<표 III-44> 응답자 일반특성 : 전공분야	50
<표 III-45> 응답자 일반특성 : 근무경력	50
<표 III-4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51
<표 IV-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자격기준(안) 등	72
<표 IV-2> 광역시·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변경(안)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제외	73
<표 IV-3> 독립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자격기준(안)	77
<표 IV-4> 독립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을 분리한)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78
<표 IV-5>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독립형 사업내용	79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	3
<그림 IV-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안)	71
<그림 IV-2> 독립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안)	76
<그림 IV-3> 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	76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목적

-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른 운영 모형(안)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 발달장애인은 41,576명(2014년 말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
-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취업 등 독립적인 성인기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14)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에 대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제정(‘12)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 12월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9개 센터(북부 3개, 남부 6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내 장애인복지기관과의 역할 중복 및 지역적 특성 및 이용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역할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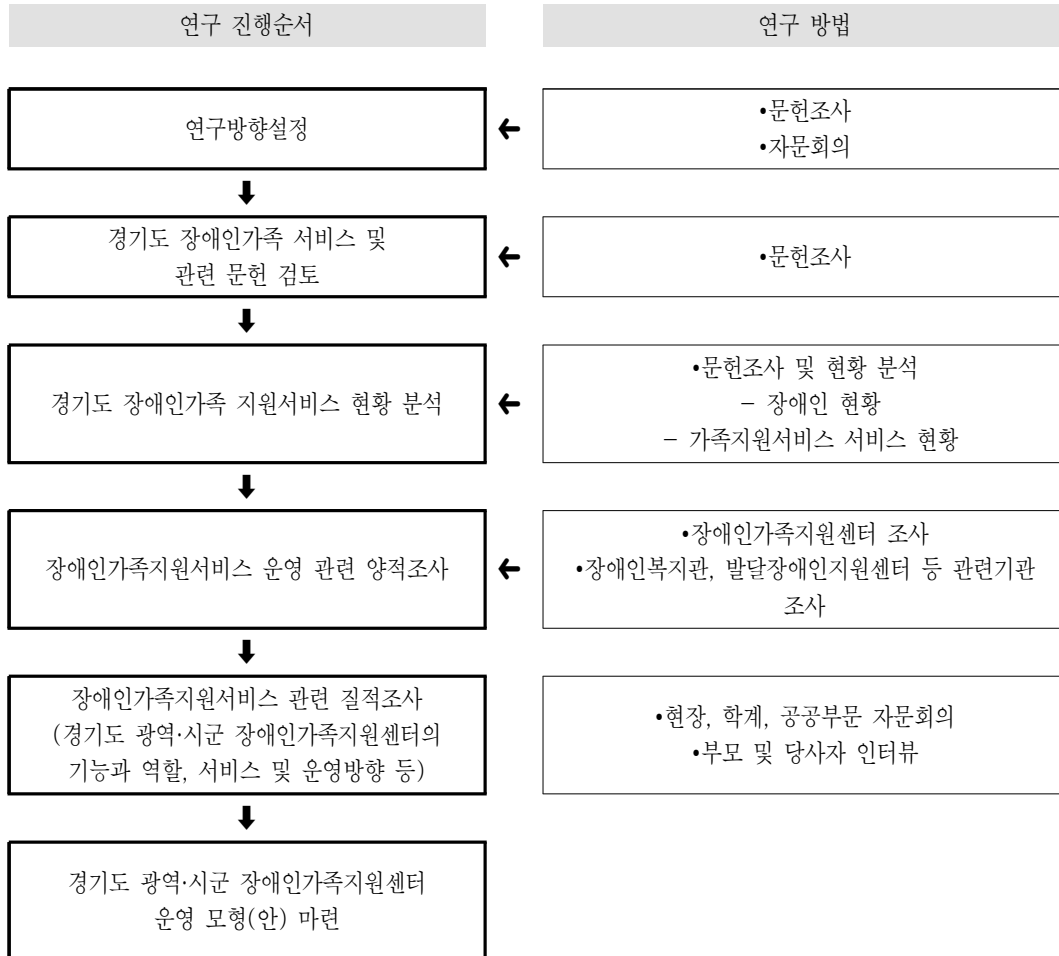
- 경기도 가족지원사업 현황 파악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양적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유형), 이용 장애인 특성, 서비스 이용 행태, 서비스 욕구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현장, 학계,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등) 자문회의 실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장애인 부모 대상 인터뷰 실시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시군)의 실질적 운영 모형(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 양적조사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북부 2개소, 남부 6개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IL센터 등 장애인가족 대상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양적조사(예. 서비스 내용, 이용 장애인 특성, 서비스 욕구,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 등) 실시
- 질적조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의견수렴(인터뷰)을 통한 서비스 유형 및 욕구 파악

□ 연구수행 체계

<그림 I -1 연구수행 체계>



Ⅱ.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II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 중앙정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 중앙정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가족상담지원,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과 같음

<표 II-1> 정부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예산
발달장애인가족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 성인 자녀 포함,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지원단가: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자부담) 참여가능하며, 이 경우 돌보미의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및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국비 70% 도비 30%

		－ 돌보미 지원(여행지 지원 및 거주지 지원) • 지원단가: 일정별 비용 산정(1인당 최대 지원 금액) <table><tr><td>당일</td><td>1박 2일</td><td>2박 3일</td></tr><tr><td>62,000원</td><td>135,000원</td><td>227,000원</td></tr></table>	당일	1박 2일	2박 3일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당일	1박 2일	2박 3일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대상: － 만 18세 미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 적, 자폐성, 뇌병변) (중복장애 인정)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 료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2회), 회당 27,500원 기준 <table><tr><th>소득기준</th><th>총 구매력</th><th></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 부담금</th></tr><tr><td>기초생활수급자(다형)</td><td rowspan="5">월 22만원</td><td rowspan="5">=</td><td>월 22만원</td><td>면제</td></tr><tr><td>차상위 계층 (가형)</td><td>월 20만원</td><td>2만원</td></tr><tr><td>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td><td>월 18만원</td><td>4만원</td></tr><tr><td>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td><td>월 16만원</td><td>6만원</td></tr><tr><td>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td><td>월 14만원</td><td>8만원</td></tr></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대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지원단가: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2회), 회당 27,500원 기준 <table><tr><th>소득기준</th><th>총 구매력</th><th></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 부담금</th></tr><tr><td>기초생활수급자(다형)</td><td rowspan="4">월 22만원</td><td rowspan="4">=</td><td>월 22만원</td><td>면제</td></tr><tr><td>차상위 계층 (가형)</td><td>월 20만원</td><td>2만원</td></tr><tr><td>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td><td>월 18만원</td><td>4만원</td></tr><tr><td>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td><td>월 16만원</td><td>6만원</td></tr></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 만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 1인당 연 480시간(단, 월 80시간 이내 원칙) 범위 내 지원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단순 캠프, 소풍 형식 지양) * 돌봄서비스 대상 가정을 우선 지원(대상 가정 50% 이상에 제공)	국비 70% 도비 30%
-----------------------------	--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도 센터 2개소, 시군 센터 7개소, 총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도 센터는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수원 소재),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정부 소재)가 설치·운영 중
 - 시군 센터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며,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구리시, 의정부시 6개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임
 - 예산은 도 센터의 경우, 북부는 373백만 원, 남부는 200백만 원이며 시·군은 종사자 인력이 가장 적은 구리시가 5,000천만, 인력(상근인력 기준)이 가장 많은 시흥시가 2억 원으로 나타남

<표 II-2>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구분		운영법인(단체)	설치연일	종사자수	보조금 (천원)
도 센 터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06. 2	상근: 4 비상근: 1	200,000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11. 4	상근: 7	373,000
시 군 센 터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12. 9	상근: 3	150,000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안산시지부	'08. 3	상근: 2 비상근: 2	100,000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11. 8	상근: 4	200,000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15. 9	상근: 3	150,000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15. 11	상근: 2 비상근: 1	150,000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12. 6	상근: 1 비상근: 1	50,000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17. 4	상근: 3	155,000

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사업

- 주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돌봄지원, 가족 휴식지원, 가족휴식지원, 교육연구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으로 나타남

<표 II-3>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사업	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가족 내 갈등, 부부문제, 행동수정, 장애자녀 양육 문제 예방 및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을 진행 - 욕구사정, 상담, 위기개입, 지원연계 등 서비스 중개 및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을 돕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 유형: 개별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사례관리, 동료상담, 전문심리상담, 찾아가는(out reach) 상담 등
가족역량강화	- 장애인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의 대처방법 향상과 사회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모교육	-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 - 유형: 장애유형, 생애주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내용으로 진행(ex: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둔 발달장애인 청소년 부모 대상 등),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등 보호자 특성에 따라 진행

사업		내용
	부부프로그램	- 양육 스트레스 해소, 부부관계증진 및 부부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장애 형제자매의 내적 스트레스 해소와 자아 존중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형제자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 - 유형: 캠프, 멘토링 프로그램, 집단 상담, 나들이 등
	자조모임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여 자립능력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지지 및 유대관계 증진으로 인해 사회적응을 강화하고 고립감 및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 - 유형: 장애 당사자 자조모임, 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비장애 형제자매 자조모임 등
돌봄지원		- 장애인의 상시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가족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도모 - 유형: 긴급돌봄, 단기돌봄, 방과 후 교육/치료, 방학 중 교육 및 보육 등
가족휴식지원		- 가족 내 구성원들의 소통 증진을 통한 결속력 강화 및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들과의 친목도모 - 돌봄 역할 수행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고립된 생활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유형: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가족문화지원(영화 및 연극관람), 가족동아리 지원 등
교육·연구사업		- 장애인가족의 생활실태와 가족문제를 파악하여 장애인 가족의 위기 예측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근거로 활용하며,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 및 정책수립의 방향을 설정 - 장애인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진행
장애인식개선 사업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사회통합을 도모 - 유형: 인식개선 캠페인(토크콘서트, 문화공연 등), 인식개선 교육 등
실태 및 욕구조사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 대응 및 방향성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제공
지역사회 조직사업		- 장애인가족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여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조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후원자, 봉사자 조직 및 관리		- 자원활동가들의 올바른 장애인식 고취와 더불어 지역 내 후원자와 자원활동가 인프라를 구축
기타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제도 정비 및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Ⅲ. 실태 조사

Ⅲ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기관

-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모형(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 센터(북부 2개, 남부 6개)를 비롯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 및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방법 및 조사실시 기간

-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2017년 3월 21일~4월 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설문 조사 내용

<표 Ⅲ-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에 관한 실태조사(설문문항)

영역	문항
A. 기관 일반현황	· 기관유형 · 운영주체 · 기관소재지 · 설립시기 · 전체 직원수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유무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주 이용대상 · 센터 예산

영역	문항
B. 기관의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현황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제공여부 및 필요성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 타 기관 연계 및 의뢰 경험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하지 않은 이유 - 주 연계 사유 - 주 연계 기관 · 향후 연계가 필요한 기관 ·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 및 대상 · 향후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C.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 광역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 ·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센터장 제외) ·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 ·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D.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시·군 지역센터의 운영 방식 · 시·군 지역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 · 지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센터장 제외) · 지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 · 지역센터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기술)

□ 초점집단인터뷰

○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실시 기간

-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모형(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족) 총 6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30일 인터뷰를 실시함
- 심층인터뷰 대상자(장애인 가족)는 총 6명으로 참여자 및 자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II-2> 심층인터뷰 참여자 특징

구분	참여자(부모)		장애 자녀의 특성					기타사항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학교	비장애 형제 유무	센터 이용 경험
참여자 1	여	60대	남	21세	뇌병변	1급	고졸	○	무
참여자 2	여	40대	남	14세	뇌병변, 지적	1급	초5 (특수)	○	무
참여자 3	여	30대	남	15세	자폐	1급	중2 (특수 학교)	○	유
참여자 4	여	40대	여	16세	지적, 뇌전증	1급	중2 (특수학교)	X	무
참여자 5	여	40대	여	18세	지적, 뇌병변	1급	고1 (일반-특수학급)	○	무
참여자 6	여	40대	남	17세	지적 (다운)	1급	중3 (일반-특수학급)	○	무

○ 초점집단 인터뷰 내용

<표 III-3> 초점집단인터뷰 면접질문 내용

면접질문 내용
1. 자녀의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연령, 보호자 연령, 거주지역 등은 어떻게 됩니까? 2.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서비스내용 및 만족정도는? 3.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혹은 개선사항은? 4.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중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또한 향후 필요한 서비스는? 5. 지역의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여부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

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분석

□ 기관 일반현황

○ 기관유형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 모색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기관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7%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50%,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이 33.3%, 지체 장애인복지관이 16.7%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 기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7	15.7
장애인종합복지관	88	51.2
장애인종별복지관	6	3.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	26.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2.3
기타(지역아동센터)	1	0.6
계	172	100.0

<표 III-5> 장애인복지관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장애인종별 복지관	지체	1
	지적장애	—
	시각	3
	청각	—
	뇌병변	2
계	6	100.0

○ 운영주체

-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68.3%, 장애인단체 23.2%,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1.2%로 나타남

<표 III-6> 운영주체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장애인단체	38	23.2
(사회복지)법인 등	112	68.3
개인운영	7	4.3
지방자치단체	2	1.2
기타	5	3.0
계	164	100.0

○ 기관소재지

-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기관소재지를 알아보면, 남부인 경우가 75.7%, 북부 24.3%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기관소재지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남부	128	75.7
북부	41	24.3
계	169	100.0

주) 경기도 지역 구분 : 남부(양평군,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하남), 북부(가평군, 연천군,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 설립시기

- 기관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설립된 경우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2010년에 설립된 경우는 33.3%, 2000년~2005년에 설립된 경우는

17.9%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8> 설립시기

(단위 : 명, %)

구분	빈도	%
~1999년까지	18	11.1
2000년~2005년까지	29	17.9
2006년~2010년까지	54	33.3
2011년~2015년까지	57	35.2
2016년 이후	4	2.5
계	162	100.0

○ 전체 직원수

- 기관의 상근·계약·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평균 34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전체 직원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직원 수
최소	2
최대	148
평균	34.0
전체(합계)	5,139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유무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유무를 알아본 결과,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37.4%, 없는 경우는 62.6%로 나타나,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있음	37	37.4
없음	62	62.6
계	99	100.0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수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수에 대해 살펴보면,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 평균 3.1명의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전담인력 수(n=34)

(단위 : 명, %)

구분	전체 전담인력 수
최소	1
최대	7
평균	3.1
전체(합계)	107

○ 전체 업무량 중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업무 비중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전체 업무량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최소 0%에서 최대 8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8.9%로 나타남

<표 III-12> 전체 업무량 중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업무 차지 비중(n=55)

(단위 : %)

구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업무 차지 비중
최소	0
최대	80
평균	18.9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주 이용대상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주 이용대상을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50.5%, 외
부신체기능장애(지체, 뇌병변) 42.1%로 나타남

<표 III-13>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주 이용대상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138	50.5
정신장애	14	5.1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	115	42.1
감각장애(시각, 청각)	4	1.5
언어장애	1	0.4
안면장애	1	0.4
내부기관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
계	273	100.0

*중복응답

□ 조사기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현황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내용

-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례관리 24.1%, 가족역량강화 30.9%, 돌봄지원 7.5%, 가족휴식(여가)지원 15.2%, 교육·연구사업 14.8%, 기타 7.3% 등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인식개선 사업(5.8%)’, 사례관리사업 중 ‘장애인가족 상담 사업(5.6%)’, 가족역량강화 사업 중 ‘부모교육(5.5%)’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중 ‘사례회의 및 교육(5.2%)’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가족역량강화 중 ‘장애인당사자 멘토링 (0.7%)’,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0.8%)’와 ‘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1.0%)’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단기(긴급)돌봄 서비스 1.8%, 주·야간 돌봄 서비스 2.2%, 방과 후 교육/치료서비스 3.4%로 나타남

<표 III-15>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내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례 관리	①장애인가족 상담	127	5.6	
	②위기장애인가족 발굴 및 사례관리	101	4.4	
	③사례회의 및 교육	119	5.2	
	④솔루션회의	72	3.2	
	⑤발달장애인부모 전문심리상담	34	1.5	
	⑥찾아가는 상담	88	3.9	
	⑦기타	7	0.3	
	소계	548	24.1	
가족 역량 강화	⑧부모교육	125	5.5	
	⑨장애인부모훈련프로그램	41	1.8	
	⑩부부프로그램	장애당사자 대상	42	1.8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42	1.8
	⑪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74	3.2	
	⑫자조모임 지원	장애당사자 대상	95	4.2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78	3.4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19	0.8
	⑬멘토링 프로그램	장애당사자 대상	54	2.4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32	1.4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16	0.7
	⑭발달장애인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83	3.6	
	⑮기타	7	0.3	
	소계	708	30.9	
돌봄 지원	⑯단기(긴급)돌봄 서비스	40	1.8	
	⑰주·야간 돌봄 서비스	50	2.2	
	⑱방과 후 교육/치료	77	3.4	

구분		빈도	%
	㉑기타	2	0.1
	소계	169	7.5
가족 휴식 (여가) 지원	㉒가족나들이	112	4.9
	㉓가족문화지원	100	4.4
	㉔가족캠프	76	3.3
	㉕동아리 활동 지원	58	2.5
	㉖기타	3	0.1
	소계	349	15.2
교육 · 연구 사업	㉗장애인인식개선 사업	132	5.8
	㉘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	19	0.8
	㉙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38	1.7
	㉚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63	2.8
	㉛장애인가족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62	2.7
	㉜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	22	1.0
	㉝기타	1	0.04
	소계	337	14.8
기타	㉞법률지원	52	2.3
	㉟장애인 이동 지원	59	2.6
	㊱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55	2.4
	㊲기타	1	0.0
	소계	167	7.3
계		2,278	100.0

*중복응답

○ 현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내용별 필요도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 사업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돌봄지원, 가족휴식(여가)지원, 교육 및 연구사업 등 대

부분의 사업 내용별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업의 경우, 먼저 장애당사자들 대상으로 한 부부 프로그램 6.1%,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프로그램도 3.8%, 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6.4%, 부모의 자조모임을 지원 3.8%, 가족나들이 5.4%, 가족캠프 10.0%, 동아리 활동지원 13.4%,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4.4%, 법률지원 7.3%로 나타남

<표 III-16> 현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내용별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사례 관리	①장애인가족 상담	－	－	52.1 (99)	47.9 (91)	100.0 (190)	
	②위기장애인가족 발굴 및 사례관리	0.5 (1)	1.1 (2)	40.5 (75)	57.8 (107)	100.0 (185)	
	③사례회의 및 교육	0.5 (1)	1.1 (2)	57.7 (109)	40.7 (77)	100.0 (189)	
	④솔루션회의	0.5 (1)	2.2 (4)	64.5 (118)	32.8 (60)	100.0 (183)	
	⑤발달장애인부모 전문심리상담	1.6 (3)	1.6 (3)	53.8 (98)	42.9 (78)	100.0 (182)	
	⑥찾아가는 상담	－	5.0 (9)	62.8 (113)	32.2 (58)	100.0 (180)	
	⑦기타	－	7.1 (1)	42.9 (6)	50.0 (7)	100.0 (14)	
가족 역량 강화	⑧부모교육	－	0.6 (1)	55.0 (99)	44.4 (80)	100.0 (180)	
	⑨장애인부모훈련프로그램	－	4.0 (7)	63.8 (113)	32.2 (57)	100.0 (177)	
	⑩부부프로그램	장애당사자 대상	－	6.1 (11)	66.3 (120)	27.6 (50)	100.0 (181)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	3.8 (7)	59.2 (109)	37.0 (68)	100.0 (184)
	⑪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	6.3 (11)	56.8 (100)	36.9 (65)	100.0 (176)
	⑫자조모임 지원	장애당사자 대상	0.6 (1)	3.3 (6)	50.3 (91)	45.9 (83)	100.0 (181)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	3.8 (7)	54.9 (101)	41.3 (76)	100.0 (184)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1.1 (2)	13.4 (24)	62.6 (112)	22.9 (41)	100.0 (179)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⑬멘토링 프로그램	장애당사자 대상	0.5 (1)	2.2 (4)	59.9 (109)	37.4 (68)	100.0 (182)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	5.5 (10)	60.2 (109)	34.3 (62)	100.0 (181)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1.1 (2)	11.4 (20)	64.0 (112)	23.4 (41)	100.0 (175)
	⑭발달장애인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1.7 (3)	3.4 (6)	37.6 (67)	57.3 (102)	100.0 (178)
	⑮기타		—	15.4 (2)	69.2 (9)	15.4 (2)	100.0 (13)
돌봄 지원	⑯단기(긴급)돌봄 서비스		1.8 (3)	9.4 (16)	52.6 (90)	36.3 (62)	100.0 (171)
	⑰주·야간 돌봄 서비스		1.8 (3)	10.5 (18)	53.8 (92)	33.9 (58)	100.0 (171)
	⑱방과 후 교육/치료		0.6 (1)	8.0 (14)	58.6 (102)	32.8 (57)	100.0 (174)
	⑲기타		—	33.3 (1)	—	66.7 (2)	100.0 (3)
가족 휴식 (여가) 지원	⑳가족나들이		—	5.3 (10)	66.3 (124)	28.3 (53)	100.0 (187)
	㉑가족문화지원		—	5.3 (10)	66.3 (124)	28.3 (53)	100.0 (187)
	㉒가족캠프		—	10.0 (18)	66.7 (120)	23.3 (42)	100.0 (180)
	㉓동아리 활동 지원		—	13.4 (24)	64.2 (115)	22.3 (40)	100.0 (179)
	㉔기타		—	10.0 (1)	30.0 (3)	60.0 (6)	100.0 (10)
교육 · 연구 사업	㉕장애인인식개선 사업		—	1.6 (3)	45.9 (85)	52.4 (97)	100.0 (185)
	㉖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		—	4.0 (7)	63.1 (111)	33.0 (58)	100.0 (176)
	㉗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	4.4 (8)	62.4 (113)	33.1 (60)	100.0 (181)
	㉘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	2.2 (4)	59.7 (108)	38.1 (69)	100.0 (181)
	㉙장애인가족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	1.7 (3)	54.4 (98)	43.9 (79)	100.0 (180)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㉔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	—	2.8 (5)	64.6 (115)	32.6 (58)	100.0 (178)
	㉕기타	—	10.0 (1)	40.0 (4)	50.0 (5)	100.0 (10)
기타	㉖법률지원	—	7.3 (13)	54.8 (97)	37.9 (67)	100.0 (177)
	㉗장애인 이동 지원	0.6 (1)	5.2 (9)	58.1 (100)	36.0 (62)	100.0 (172)
	㉘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0.6 (1)	3.5 (6)	59.9 (103)	36.0 (62)	100.0 (172)
	㉙기타	—	—	25.0 (1)	75.0 (3)	100.0 (4)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가족역량강화 사업 28.2%, 사례관리 사업 19.01%, 돌봄양육지원 18.8%, 자원개발 및 연계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17>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례관리	79	19.0
가족역량강화	117	28.2
돌봄양육지원	78	18.8
가족휴식(여가)지원	51	12.3
교육연구사업	31	7.5
자원개발 및 연계(네트워크)	57	13.7
기타	2	0.5
계	415	100.0

주) 중복응답

○ 최근 1년 간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 여부

- 최근 1년 간 다른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있다는 경우가 61.4%, 없다는 경우는 38.6%인 것으로 나타나,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다른 기관에의 연계 및 의뢰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없다	76	38.6
있다	121	61.4
계	197	100.0

○ (연계 경험이 없는 경우)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하지 않은 이유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연계 및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의뢰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66.7%), 지역 내 의뢰 및 연계할 자원이 없어서(14.5%)로 나타남

<표 III-19> 다른 기관에의 연계 및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의뢰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46	66.7
지역 내 의뢰 및 연계한 자원이 없어서	10	14.5
의뢰하고자 했던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1	1.4
이용자가 원치 않아서	4	5.8
기타	8	11.6
계	69	100.0

○ (연계 경험이 있는 경우) 주된 연계 사유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사유로 연계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61.7%), 우리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29.6%)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0> 다른 기관에의 연계 및 의뢰를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우리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	34	29.6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71	61.7
접근성 때문에	4	3.5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해서	3	2.6
기타	3	2.6
계	115	100.0

○ (연계 경험이 있는 경우) 주된 연계 기관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연계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 12.6%, 장애인복지관 10.6%,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의료기관은 각각 6.7%의 순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1> 주로 연계하는 기관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회 복지 시설	①종합사회복지관	30	5.6
	②노인복지관	8	1.5
	③장애인복지관	57	10.6
	④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8	3.3
	⑤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	2.8
	⑥발달장애인지원센터	7	1.3
	⑦장애인의료재활시설	8	1.5
	⑧재활공학지원센터	19	3.5
	⑨특수교육지원센터	36	6.7
	⑩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19	3.5
	⑪장애인단기보호시설	16	3.0

구분		빈도	%
	⑫장애인생활시설	20	3.7
	⑬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3	2.4
	⑭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	0.9
	⑮정신요양시설	2	0.4
	⑯아동상담소	11	2.0
	⑰건강가정지원센터	26	4.8
	⑱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0.2
	⑲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1.9
	⑳성폭력피해보호시설	7	1.3
	㉑가정폭력보호시설	4	0.7
	㉒성매매피해지원시설	1	0.2
	㉓기타	23	4.3
근린 생활 시설	㉔관공서(주민센터)	68	12.6
	㉕경찰서	28	5.2
	㉖소방관계 기관	6	1.1
	㉗의료기관	36	6.7
	㉘교육기관	25	4.6
	㉙문화체육시설	16	3.0
	㉚기타	4	0.7
계		539	100.0

주) 중복응답

- 지금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기관
- － 지금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6%, 주민센터 등 관공서 6.6%, 의료기관 6.4%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2> 향후 사업 위해 연계가 필요한 기관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회 복지 시설	①종합사회복지관	49	3.4
	②노인복지관	18	1.3
	③장애인복지관	61	4.3
	④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2	4.3
	⑤장애인가족지원센터	108	7.6
	⑥발달장애인지원센터	111	7.8
	⑦장애인의료재활시설	49	3.4
	⑧재활공학지원센터	50	3.5
	⑨특수교육지원센터	64	4.5
	⑩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54	3.8
	⑪장애인단기보호시설	47	3.3
	⑫장애인생활시설	49	3.4
	⑬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44	3.1
	⑭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8	1.3
	⑮정신요양시설	12	0.8
	⑯아동상담소	22	1.5
	⑰건강가정지원센터	55	3.9
	⑱한부모가족복지시설	23	1.6
	⑲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1.8
	⑳성폭력피해보호시설	32	2.2
	㉑가정폭력보호시설	23	1.6
	㉒성매매피해지원시설	9	0.6
	㉓기타	7	0.5
근린 생활 시설	㉔관공서(주민센터)	94	6.6
	㉕경찰서	61	4.3
	㉖소방관계 기관	28	2.0
	㉗의료기관	91	6.4
	㉘교육기관	73	5.1
	㉙문화체육시설	84	5.9
	㉚기타	5	0.4
계		1,428	100.0

주) 중복응답

○ 생애주기 중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

-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우선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동기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영유아기 22.7%, 청소년기 20.1%, 성인초기 19.4%, 성인중기 6.4%, 노년기 2.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3> 생애주기 중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영유아기	96	22.7
아동기	120	28.4
청소년기	85	20.1
성인초기(20-40세)	82	19.4
성인중기(40-60세)	27	6.4
노년기	12	2.8
계	422	100.0

주) 중복응답

○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장애인 가족 유형

-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으로 48.6%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장애가 25.2%, 정신장애가 21.7%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4>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204	48.6
정신장애	91	21.7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	106	25.2
감각장애(시각, 청각)	7	1.7
언어장애	3	0.7
안면장애	1	0.2
내부기관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8	1.9
계	420	100.0

주) 중복응답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26.3%,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 25.5%, 인력확충 22.7%, 법제화 10.1%, 대상자 발굴 및 홍보 9.6%, 접근성 제고 5.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5>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인력확충	94	22.7
인력의 전문성 강화	109	26.3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	106	25.5
접근성 제고	24	5.8
대상자 발굴 및 홍보	40	9.6
법제화	42	10.1
기타	-	-
계	415	100.0

주) 중복응답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기관유형별)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몰랐다 또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III-26>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단위 : %, 명)

구분	몰랐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3 (2)	8.3 (2)	83.3 (20)	100.0 (24)
장애인종합복지관	26.7 (23)	46.5 (40)	26.7 (23)	100.0 (86)
장애인중별복지관	50.0 (3)	50.0 (3)	0.0 (0)	100.0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3.9 (11)	50.0 (23)	26.1 (12)	100.0 (4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0 (0)	25.0 (1)	75.0 (3)	100.0 (4)
기타	0.0 (0)	100.0 (1)	0.0 (0)	100.0 (1)
전체	23.4 (39)	41.9 (70)	34.7 (58)	100.0 (167)

○ 광역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

- 경기도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관유형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구축(60.1), 조사연구사업(58.1%), 교육사업(53.6%), 장애인가족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50.9%), 지역사회조직사업(5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조사연구사업(80.0%), 교육사업(72.0%),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70.8%), 장애인 가족지원(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70.8%), 지역사회조직사업(60.4%)에서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하였음. 이에 반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16.7%),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13.0%),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7%),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8.3%)로 나타남
- 장애인종합복지관 응답자의 경우에도 조사연구사업(58.6%), 교육사업(51.7%),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사업(50.6%)에서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반해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5.8%),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5.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4.6%),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4.6%)의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음. 즉,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

- 레 발굴 및 지원의 경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와 장애인복지관 응답자의 경우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조직사업(75.0%),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 (75.0%)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사업 등에서 ‘그저 그렇다(50.0%)’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7>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전체

(단위 : %, 명)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계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5.4 (9)	4.8 (8)	25.6 (43)	33.3 (56)	31.0 (52)	100.0 (168)
가족역량강화사업	3.0 (5)	8.4 (14)	24.7 (41)	36.7 (61)	27.1 (45)	100.0 (166)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6 (6)	7.2 (12)	30.5 (51)	37.7 (63)	21.0 (35)	100.0 (167)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3.0 (5)	6.6 (11)	31.7 (53)	34.7 (58)	24.0 (40)	100.0 (167)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3.6 (6)	7.8 (13)	24.7 (41)	34.3 (57)	29.5 (49)	100.0 (166)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	3.6 (6)	2.4 (4)	14.9 (25)	38.7 (65)	40.5 (68)	100.0 (168)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사업	0.6 (1)	3.6 (6)	18.0 (30)	35.3 (59)	42.5 (71)	100.0 (167)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道) 단위 행사	1.8 (3)	8.3 (14)	22.0 (37)	25.0 (42)	42.9 (72)	100.0 (168)
교육사업	2.4 (4)	4.2 (7)	8.9 (15)	31.0 (52)	53.6 (90)	100.0 (168)
조사연구사업	2.4 (4)	1.8 (3)	10.8 (18)	26.9 (45)	58.1 (97)	100.0 (167)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1.2 (2)	3.0 (5)	13.8 (23)	31.1 (52)	50.9 (85)	100.0 (167)
지역사회조직사업	1.8 (3)	1.2 (2)	10.1 (17)	36.3 (61)	50.6 (85)	100.0 (168)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	3.0 (5)	2.4 (4)	11.9 (20)	22.6 (38)	60.1 (101)	100.0 (168)

<표 III-28>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단위 : %, 명)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계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0.0 (0)	8.3 (2)	25.0 (6)	25.0 (6)	41.7 (10)	100.0 (24)
가족역량강화사업	0.0 (0)	16.7 (4)	37.5 (9)	16.7 (4)	29.2 (7)	100.0 (24)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0.0 (0)	8.7 (2)	52.2 (12)	26.1 (6)	13.0 (3)	100.0 (23)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0.0 (0)	13.0 (3)	34.8 (8)	21.7 (5)	30.4 (7)	100.0 (2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0.0 (0)	8.3 (2)	12.5 (3)	29.2 (7)	50.0 (12)	100.0 (2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 복 사례 발굴·지원	0.0 (0)	0.0 (0)	20.8 (5)	33.3 (8)	45.8 (11)	100.0 (24)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 이디어 공모 사업	0.0 (0)	0.0 (0)	8.3 (2)	41.7 (10)	50.0 (12)	100.0 (24)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道) 단위 행사	0.0 (0)	0.0 (0)	8.3 (2)	20.8 (5)	70.8 (17)	100.0 (24)
교육사업	0.0 (0)	0.0 (0)	4.0 (1)	24.0 (6)	72.0 (18)	100.0 (25)
조사연구사업	0.0 (0)	0.0 (0)	8.0 (2)	12.0 (3)	80.0 (20)	100.0 (25)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프로그 램 및 교육과정 개발	0.0 (0)	0.0 (0)	4.2 (1)	25.0 (6)	70.8 (17)	100.0 (24)
지역사회조직사업	0.0 (0)	0.0 (0)	8.0 (2)	28.0 (7)	64.0 (16)	100.0 (25)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 보) 구축	0.0 (0)	0.0 (0)	3.8 (1)	3.8 (1)	92.3 (24)	100.0 (26)

<표 III-29> 광역센터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_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 %, 명)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계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5.7 (5)	4.6 (4)	18.4 (16)	41.4 (36)	29.9 (26)	100.0 (87)
가족역량강화사업	2.3 (2)	6.9 (6)	24.1 (21)	42.5 (37)	24.1 (21)	100.0 (8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4.6 (4)	4.6 (4)	27.6 (24)	47.1 (41)	16.1 (14)	100.0 (87)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3.4 (3)	4.6 (4)	31.0 (27)	39.1 (34)	21.8 (19)	100.0 (87)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5.8 (5)	9.3 (8)	23.3 (20)	32.6 (28)	29.1 (25)	100.0 (86)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 복 사례 발굴·지원	4.6 (4)	3.4 (3)	11.5 (10)	41.4 (36)	39.1 (34)	100.0 (87)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 이디어 공모 사업	1.1 (1)	3.4 (3)	18.4 (16)	26.4 (23)	50.6 (44)	100.0 (87)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道) 단위 행사	2.3 (2)	5.7 (5)	19.5 (17)	28.7 (25)	43.7 (38)	100.0 (87)
교육사업	3.4 (3)	3.4 (3)	6.9 (6)	34.5 (30)	51.7 (45)	100.0 (87)
조사연구사업	3.4 (3)	1.1 (1)	8.0 (7)	28.7 (25)	58.6 (51)	100.0 (87)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프로그 램 및 교육과정 개발	1.1 (1)	2.3 (2)	13.8 (12)	33.3 (29)	49.4 (43)	100.0 (87)
지역사회조직사업	2.3 (2)	2.3 (2)	9.2 (8)	36.8 (32)	49.4 (43)	100.0 (87)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 보) 구축	1.2 (1)	3.5 (3)	7.1 (6)	28.2 (24)	60.0 (51)	100.0 (85)

○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

-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최소 3명에서 최대 20명 평균 6.9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최소 2명에서 최대 60명, 장애인중별복지관의 경우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30명,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평균 9.2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0>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수(센터장 제외)

(단위 :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20	6.9
장애인종합복지관	2	60	9.5
장애인중별복지관	2	5	3.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	30	10.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15	12.5
기타	3	3	3.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중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두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예. 4개 권역)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1>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 적정 설치 수

(단위 : %, 명)

구분	현행 유지 (남부, 북부 총2개소)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예: 4개)	기타	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8.5(10)	53.8(14)	7.7(2)	100.0(26)
장애인종합복지관	9.4(8)	87.1(74)	3.5(3)	100.0(85)
장애인중별복지관	-	100.0(5)	-	100.0(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6.3(7)	76.7(33)	7.0(3)	100.0(4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5.0(1)	75.0(3)	-	100.0(4)
기타		100.0(1)	-	100.0(1)
전체	15.9(26)	79.3(130)	4.9(8)	100.0(164)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강화(46.4%),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44.9%), 발달장애인법 시행(지역발달장애인센터 설치 등)(38.6%),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강조(38.4%) 등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56.0%),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복지 서비스 격차(56.0%),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56.0%),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수의 증가(52.0%)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2>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_전체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장애등급제 개편	6.0 (10)	4.8 (8)	25.9 (43)	31.3 (52)	31.9 (53)	100.0 (166)
발달장애인법 시행(지역발달장애인센터 설치 등)	3.0 (5)	4.8 (8)	13.3 (22)	40.4 (67)	38.6 (64)	100.0 (166)
도(道)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수의 증가	1.2 (2)	2.4 (4)	24.7 (41)	36.1 (60)	35.5 (59)	100.0 (166)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	—	1.8 (3)	15.6 (26)	37.7 (63)	44.9 (75)	100.0 (167)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	0.6 (1)	1.2 (2)	15.7 (26)	45.2 (75)	37.3 (62)	100.0 (166)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	0.6 (1)	10.2 (17)	42.8 (71)	46.4 (77)	100.0 (166)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강조	1.2 (2)	1.2 (2)	13.4 (22)	45.7 (75)	38.4 (63)	100.0 (164)

<표 III-33>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_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장애등급제 개편	0.0 (0)	4.0 (1)	24.0 (6)	32.0 (8)	40.0 (10)	100.0 (25)
발달장애인법 시행(지역발달장애 인센터 설치 등)	0.0 (0)	4.0 (1)	12.0 (3)	40.0 (10)	44.0 (11)	100.0 (25)
도(道)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 치수의 증가	0.0 (0)	0.0 (0)	4.0 (1)	44.0 (11)	52.0 (13)	100.0 (25)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	-	0.0 (0)	4.0 (1)	40.0 (10)	56.0 (14)	100.0 (25)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 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	0.0 (0)	0.0 (0)	8.0 (2)	36.0 (9)	56.0 (14)	100.0 (25)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	0.0 (0)	8.0 (2)	36.0 (9)	56.0 (14)	100.0 (25)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강조	0.0 (0)	0.0 (0)	8.0 (2)	52.0 (13)	40.0 (10)	100.0 (25)

<표 III-34>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_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장애등급제 개편	7.1 (6)	4.7 (4)	34.1 (29)	35.3 (30)	18.8 (16)	100.0 (85)
발달장애인법 시행(지역발달장애 인센터 설치 등)	5.8 (5)	3.5 (3)	12.8 (11)	43.0 (37)	34.9 (30)	100.0 (86)
도(道)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 치수의 증가	2.3 (2)	2.3 (2)	23.3 (20)	44.2 (38)	27.9 (24)	100.0 (86)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	-	2.3 (2)	19.8 (17)	37.2 (32)	40.7 (35)	100.0 (86)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 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	0.0 (0)	2.3 (2)	19.8 (17)	47.7 (41)	30.2 (26)	100.0 (86)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	1.2 (1)	12.8 (11)	46.5 (40)	39.5 (34)	100.0 (86)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강조	2.4 (2)	0.0 (0)	17.6 (15)	52.9 (45)	27.1 (23)	100.0 (85)

○ 기타 광역센터로의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기타 광역센터로서 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역센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
 - 광역, 시·군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브랜드) 추진
 -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보를 통한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지원 즉, 실무자 역량강화 실시
 -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업무 공유, 결속력 증진, 연합사업 진행 등을 위한 '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직접사업보다는 각 시·군센터를 지원하거나 도(광역) 단위 장애인가족 행사 주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한 보급 활동
- 광역센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장애인복지관 응답자)
 - 광역센터와 장애인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 구축
 -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각 기관별 가족상담 전문 인력 배치
 - 생애주기별 장애 가족지원센터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
 - 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전문상담원 배치 등을 비롯한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평준화 사업 실시(다양한 복지사업,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나, 31개 시군에 똑같은 기준의 복지사업 분포도 필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시·군·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기관유형별)

○ 시·군 지역센터의 운영 방안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제외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66.7%), 장애인종합복지관(68.2%), 장애인종합복지관(83.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66.7%) 모두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즉,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75.0%)이 높게 나타나 다른 기관 응답자들과 상반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5> 시·군 지역센터 운영 방안

(단위 : %, 명)

구분	단독 운영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 운영	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3.3 (9)	66.7 (18)	100.0 (27)
장애인종합복지관	31.8 (28)	68.2 (60)	100.0 (88)
장애인중별복지관	16.7 (1)	83.3 (5)	100.0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3.3 (15)	66.7 (30)	100.0 (4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5.0 (3)	25.0 (1)	100.0 (4)
기타	0.0 (0)	100.0 (1)	100.0 (1)
전체	32.7 (56)	67.3 (115)	100.0 (171)

○ (단독운영) 응답 이유

- 시·군 지역센터가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문성 강화(46.4%)’, ‘다양한 욕구에 대응(25.0%)’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응(55.6%)’,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전문성 강화(53.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성 강화(46.7%)’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 각각 33.3%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

<표 III-36> 시·군 지역센터 운영 방안(단독운영) 응답 이유

(단위 : %, 명)

구분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장애인 종합 복지관	장애인 중별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기타	전체
관리의 효율성	11.1 (1)	17.9 (5)	0.0 (0)	13.3 (2)	33.3 (1)	—	16.1 (9)
비용절감	0.0 (0)	3.6 (1)	0.0 (0)	0.0 (0)	0.0 (0)	—	1.8 (1)
전문성 강화	33.3 (3)	53.6 (15)	0.0 (0)	46.7 (7)	33.3 (1)	—	46.4 (26)
다양한 욕구에 대응	55.6 (4)	14.3 (4)	100.0 (1)	20.0 (3)	33.3 (1)	—	25.0 (14)
경쟁구조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0.0 (0)	7.1 (2)	0.0 (0)	0.0 (0)	0.0 (0)	—	3.6 (2)
유사중복 방지	0.0 (0)	0.0 (0)	0.0 (0)	13.3 (2)	0.0 (0)	—	3.6 (2)
창구 일원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0.0 (0)	3.6 (1)	0.0 (0)	6.7 (1)	0.0 (0)	—	3.6 (2)
기타	—	—	—	—	—	—	—
계	100.0 (9)	100.0 (28)	100.0 (1)	100.0 (15)	100.0 (3)	—	100.0 (56)

○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군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내용의 필요 정도

-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n=55)에 대해 시·군 지역센터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52.7%), 가족 역량강화(47.3%), 발달장애인 지원사업(43.6%), 장애인가족지원(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41.8%), 지역사회조직사업(40.0%), 장애인가족 돌봄 양육지원사업(38.2%)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8.9%), 가족역량강화사업(88.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8.9%), 지역사회조직사업(66.7%)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광역센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역량강화사업(66.7%)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에서 각각 66.7%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III-37> 시·군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내용의 필요정도(단독운영의 경우)_전체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	9.1 (5)	5.5 (3)	32.7 (18)	52.7 (29)	100.0 (55)
가족역량강화사업	—	—	9.1 (5)	43.6 (24)	47.3 (26)	100.0 (55)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8 (1)	—	10.9 (6)	43.6 (24)	43.6 (24)	100.0 (55)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	1.8 (1)	14.5 (8)	45.5 (25)	38.2 (21)	100.0 (55)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	3.6 (2)	23.6 (13)	40.0 (22)	32.7 (18)	100.0 (55)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 복 사례 발굴·지원	—	1.8 (1)	23.6 (13)	38.2 (21)	36.4 (20)	100.0 (55)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 이디어 공모 사업	3.6 (2)	9.1 (5)	25.5 (14)	30.9 (17)	30.9 (17)	100.0 (55)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道) 단 위 행사	10.9 (6)	10.9 (6)	36.4 (20)	14.5 (8)	27.3 (15)	100.0 (55)
교육사업	5.5 (3)	3.6 (2)	18.2 (10)	36.4 (20)	36.4 (20)	100.0 (55)
조사연구사업	3.6 (2)	7.3 (4)	21.8 (12)	29.1 (16)	38.2 (21)	100.0 (55)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프로그 램 및 교육과정 개발	1.8 (1)	5.5 (3)	21.8 (12)	29.1 (16)	41.8 (23)	100.0 (55)
지역사회조직사업	1.8 (1)	3.6 (2)	14.5 (8)	40.0 (22)	40.0 (22)	100.0 (55)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 보) 구축	4.1 (2)	8.2 (4)	18.4 (9)	36.7 (18)	32.7 (16)	100.0 (49)

<표 III-38> 시·군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내용의 필요정도(단독운영의 경우)_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	0.0 (0)	0.0 (0)	11.1 (1)	88.9 (8)	100.0 (9)
가족역량강화사업	-	-	0.0 (0)	11.1 (1)	88.9 (8)	100.0 (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0.0 (0)	-	11.1 (1)	0.0 (0)	88.9 (8)	100.0 (9)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	11.1 (1)	11.1 (1)	22.2 (2)	55.6 (5)	100.0 (9)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	0.0 (0)	0.0 (0)	44.4 (4)	55.6 (5)	100.0 (9)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 복 사례 발굴·지원	-	0.0 (0)	33.3 (3)	11.1 (1)	55.6 (5)	100.0 (9)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 이디어 공모 사업	22.2 (2)	11.1 (1)	33.3 (3)	11.1 (1)	22.2 (2)	100.0 (9)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道) 단위 행사	33.3 (3)	22.2 (2)	22.2 (2)	0.0 (0)	22.2 (2)	100.0 (9)
교육사업	22.2 (2)	0.0 (0)	33.3 (3)	22.2 (2)	22.2 (2)	100.0 (9)
조사연구사업	11.1 (1)	11.1 (1)	22.2 (2)	11.1 (1)	44.4 (4)	100.0 (9)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프로그 램 및 교육과정 개발	11.1 (1)	11.1 (1)	33.3 (3)	11.1 (1)	33.3 (3)	100.0 (9)
지역사회조직사업	0.0 (0)	0.0 (0)	11.1 (1)	22.2 (2)	66.7 (6)	100.0 (9)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 보) 구축	12.5 (1)	12.5 (1)	25.0 (2)	25.0 (2)	25.0 (2)	100.0 (8)

○ 시·군 지역센터 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

- 시·군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최소 2명에서 최대 11명 평균 5.1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최소 2명에서 최대 60명, 장애인중별복지관의 경우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30명, 발달장애 인지원센터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제시함
- 이에 따라 평균 8.0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평균 8.0명)은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평균 9.2명)과 비교해 볼 때 1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9>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수(센터장 제외)

(단위 :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	11	5.1
장애인종합복지관	2	60	8.6
장애인중별복지관	3	10	5.7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	30	8.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15	11.2
기타	3	3	3.0
전체	1	60	8.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기관유형 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중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두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각 시군 당 1개소(45.8%),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5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에도 각 시군 당 1개소(50.0%),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50.0%)로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I-40>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시·군센터 적정 설치 수

(단위 : %, 명)

구분	각 시군 당 1개소	지역 특성(접근성, 복지인프라 등)에 따라 차등 설치	기타	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5.8 (11)	50.0 (12)	4.2 (1)	100.0 (24)
장애인종합복지관	22.4 (19)	74.1 (63)	3.5 (3)	100.0 (85)
장애인종별복지관	0.0 (0)	100.0 (5)	0.0 (0)	100.0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8.6 (17)	56.8 (25)	4.5 (2)	100.0 (4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0.0 (2)	50.0 (2)	0.0 (0)	100.0 (4)
기타	0.0 (0)	100.0 (1)	0.0 (0)	100.0 (1)
전체	30.1 (49)	66.3 (108)	3.7 (6)	100.0 (163)

○ 시·군 지역 센터로의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기타 시·군 지역 센터로서 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응답자의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군 지역 센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
 - 지역적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개발 및 진행
 - 종합복지관과 다른 소규모,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접근,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및 경력 인정 등의 어려움 해소
 -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차별화된 '특화' 사업 진행
 - 지역 내 장애인 가족 유형, 특성, 욕구 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시·군 지역센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장애인복지관 응답자)
 - 전문상담원 심리상담/ 부부갈등이나 장애수용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제 장애가족의 욕구조사와 네트워크 기관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
 - 가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수행 인력 배치
 - 전문 상담 인력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관내 중복사업 고려 즉, 유사 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계획 필요
 - 기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불필요하게 센터만 설치되는 것은 지양해야함.
 - 단순프로그램(여가문화, 직업훈련 등) 지원하고 있는 현재 운영사업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욕구와 수요조사 실시 필요,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의 일부 의견을 배제, 직원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성
 -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

○ 응답자 일반특성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에 대하여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연령대별, 학력, 전공분야, 근무경력, 직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7.5%, 여성이 72.5%로 나타남
- 연령대는 30세~39세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9세 이하의 경우도 24.0%, 40~49세인 경우 21.0%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은 대학교 졸업 64.3%, 석사 졸업 17.9%, 전문대학 졸업 10.6%, 고등학교 졸업 7.2%의 순으로 나타남
- 전공분야는 사회복지 83.4%, 기타 9.3%, 특수교육 2.9%, 치료분야 2.4%, 행정 2.0%의 순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은 3년 이상~5년 미만 30.5%, 5년 이상~10년 미만 28.0%, 3년 미만 23.2%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은 사무국장, 직무대리, 간사, 국장, 시설장, 실장, 주임, 팀장, 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표 III-41> 응답자 일반특성 :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남자	58	27.5
여자	153	72.5
계	211	100.0

<표 III-42> 응답자 일반특성 : 연령대

(단위 : 명, %)

구분	빈도	%
~ 29세 이하	48	24.0
30세 ~ 39세	91	45.5
40세 ~ 49세	42	21.0
50세 ~ 64세	19	9.5
65세 이상 ~	—	—
계	200	100.0

<표 III-43> 응답자 일반특성 : 학력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고등학교 졸업	15	7.2
전문대학 졸업	22	10.6
대학 졸업	133	64.3
대학원(석사) 졸업	37	17.9
대학원(박사) 졸업	—	—
계	207	100.0

<표 III-44> 응답자 일반특성 : 전공분야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회복지	171	83.4
특수교육	6	2.9
치료분야	5	2.4
행정	4	2.0
기타	19	9.3
계	205	100.0

<표 III-45> 응답자 일반특성 : 근무경력

(단위 : 명, %)

구분	빈도	%
~ 3년 미만	19	23.2
3년 이상 ~ 5년 미만	25	30.5
5년 이상 ~ 10년 미만	23	28.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	14.6
15년 이상 ~	3	3.7
계	82	100.0

3. 이용자 인터뷰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참여자들 대부분은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일부 참여자들 중 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자녀의 특성(예. 자녀의 연령, 장애정도, 개별적 특성 즉, 경기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따른 우려 등)에 따라 장애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원하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거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단기간(예. 6개월 정도) 실시되고 종료되어, 추후 프로그램이 실시되기까지 대기하거나, 실시가 되더라도 대상자 선정 및 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심층인터뷰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I-4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구분	세부 내용
현재 가족지원서비스 이용기관, 서비스내용 및 만족정도	·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개선사항)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홍보 문제 · 장애 학생이 고려되지 않고,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프로그램 문제 · 신변처리가 가능한 장애 자녀 대상 서비스 제공 등 기관 이용자 선정 기준 문제 · 장애 자녀의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중에 꼭 필요한 서비스, 향후 필요한 서비스는?	· 단기보호센터 및 휴식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이를 위한 예산 지원 · 서비스 이용자 선별로 인한 대상자 탈락 문제 해결 · 장애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장애 자녀-이용경험이 적은 장애 자녀를 매칭하여 서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제공 및 확대 · 비장애 형제 및 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병원에서 장애 자녀 출산 이후 관련 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사 연결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의 중복여부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 터의 필요성	· 현재 참여자들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가 낮고, 이용하고 있지 않음 에 따라 관련 문항 대신 위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어려움 및 문제점, 향 후 개선방안 등으로 대체하여 제시함

□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서비스내용 및 만족정도

○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

-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기관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만족도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참여자들 모두 활동지원제도 외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중략)..저희는 여기 가족지원센터 있어도 저희는 여기가 왜, 뭐가 있는지, 왜 와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1)
-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하는 거가 아직 어떤 제도인지 서비스를 잘 몰라요.” (참여자 4)

-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

□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혹은 개선사항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홍보 문제

- 가족지원센터의 홍보 부족 및 연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참여자들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고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만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기관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함

-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참여자 3)

- “한 번도 안 와봤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중략)..옆에 있는데도 여기가 뭐하는데 인지조차도, 와서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휠체어라든가 대여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안 해줘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홍보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봐도 우리가 원하는 걸 또 얻을 수도 없어요. ...(중략).. 이 자체가 가족지원센터, 뭐하는 곳인지 이름만 보고 지나가요. 저기 뭐하는 곳이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요. (참여자 1)
- “여기 가족지원서비스를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하고 같이 실습하면서 참 이런 곳이 있겠구나, 우리 아들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듣다보니까..팬히 아, 그러네요.”(참여자 6)

- 장애 학생이 고려되지 않고,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프로그램 문제
 -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통지서를 받아보아도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에 따라 “어차피 우리아이는 안되니깐..”이라는 마음으로 장애자녀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현재는 통지문 등을 읽어보지 않게 되었다고 함

- “학교에서 공문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서비스 어디서 뭐, 뭔가 한다 해서 몇 명 모집을 한다 하면 활동하는 애들을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어차피 안 되지고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왜냐하면 보통 캠프를 간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걸어다니고 할 수 있고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활동이 되다보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아, 어차피 우린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중략)..아니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캠프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참여자 2)

- 신변처리가 가능한 장애 자녀 대상 서비스 제공 등 기관 이용자 선정 기준 문제
 - 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기본적으로 신변처리가 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비롯하여 복지기관에서도 신변처리 등이 가능한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자가 와도 중증이거나, 연령대가 높고 체격이 큰 아이와 같은 경우 센터에서 인력지원이 더 필요함에 따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이랑 **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애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너네는 애들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 **이는 못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생각을 아예 해버려요.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조건 다 얘기 들어보면 시설이나 어디 얘기 들어보면 아, 어느 정도는 혼자서 대소변도 다 되겠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만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지..(중략)..안 되는 중증 애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 스스로 다 할 줄 알아야 그거를 받아준다고 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애도 아직 대소변 못 가려요. 기저귀 차기는 하지만 걷는 거 잘 걸어요. 걷기는 하지만 대소변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도움을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이런 데에서 받아준다고는 저희는 아예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우리 애는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가가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참여자4)
- “그리고 진짜 상태 좋은 애들이 만약에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애들이 사실 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참여자 2)

- 그러다보니, 기존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던 장애자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점차 정보에서도, 관심에서도 멀어졌다고 함

- “본인이 알아서 같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인데 애네들은 다 누워있는 애들이니까 애네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혹시 그게 다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불편하고 힘들고 애한테 몇 명이 매달려야 되니까 할 수가 없죠.”(참여자 2)

○ 장애 자녀의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장애 자녀의 연령이 낮고, 간질 등으로 경기가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어렵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 및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중략)..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며 이런 거는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저도 참여 안 하는 게 일단은 저희 애는 경기가 너무 잦아서..부모가 따라가기는 하

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또한 위낙에 자주 떨어지거나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참여자4)

□ 가족지원서비스 중에 꼭 필요한 서비스 및 향후 필요한 서비스

○ 단기보호센터 및 휴식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으나,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큰 경우 부모가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임. 특히,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족들은 아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장애인가족 특히, 부모를 위해 단기보호센터 및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 발생 시 몇 일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주었으면 함
- 현재 참여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경기도 ***시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함. 다만, 시설이 주변에 있더라도, 급한 상황 시 기관에서 빈자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이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제기함

- “저는요, 이게 꼭 말하자면 출퇴근 식으로 아침 갔다가 저녁에 가는 거 말고 단기 보호시설 같은 거는 하면 안 될까요? 시에서든, 도에서든..”(참여자1)
- “작년에 데려갔는데 고관절이 빠져서 그런지도 모르고 진짜 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빈소 옆에 방 안에 있었는데 애는 울기도 울죠, 어떻게 맡길 데는 없죠, 상주 노릇은 해야죠, 어우 굉장히 애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여기저기 서울에 단기보호시설을 다 알아봤는데 성북구에 하나가 있는데 서울주민이 아니면 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며칠, 며칠 가니까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이용하겠다, 이러는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예약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가야 되는데 거기가 빈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중략)..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하고 싶은데 서울도 그래서 멀어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거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단기보호가 없다는 사실이, 진짜 어떤 때는 그런 부모도 있대요. 다 같이 죽자,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려면 조금 부모가 조금 쉴 틈을 줘야...(중략)..”(참여자 1)
- “...(중략)..문제는 전 조그마했을 때는 영우엄마처럼 조그마했을 때는 다 데리고 다

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차에다 넣었다, 뺐다 자체가 휠체어 실어서 어디 구경 갔다가 또 차에다 넣었다, 뺐다 부모가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지겨우니까 안가고 매일 싸우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이제는. 그걸로 싸워요, 애가 크니까. 어디 맡겨야 되는데. 근데 맡길 시설조차도 없어요. ..(중략)..단기보호시설 며칠이라도 부모가 힐링할 수 있고 만약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저는 어떤 곳인지 진짜 몰라요. 근데 뇌성마비복지관은 아시죠? 그쪽에서는 부모가 1박을 할 수 있게 부모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람 해주고 1박을 봐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중략)..뇌성마비복지관처럼 1박이라도...하루라도 봐주고 좀 부모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또 우리끼리는 공감대가 되고 그랬을 때 서로 이해도 되고 부모들끼리 어떤 정보도 좀 얻고 예를 들어서 밥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면 사람이 다 통하잖아요? ..(중략)내가 즐기 않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꼭 가야될 상황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역별로 시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있으면 단기, 급할 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2박 3일 입원했을 때 좀 봐줄 수 있는 곳, 그런 게 저는 지금 꼭 필요하더라고요.” (참여자 1)

- “저희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언니들 보면 진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참여자 2)

○ 서비스 지속적 제공 및 이를 위한 예산 지원

-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특히, 예산 지원의 문제로 인하여 3월~8월(6개월)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추후 프로그램이 실시되기까지 대기한다고 하였음

- “작년에는 그 여가생활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조모임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도 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이면 예산을 다 써버려서 그때까지 하고 저희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중략)..여기는 오고 싶어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참여자3)
- “계속 이어서 설명을 했으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다른 친구 이용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이쪽에서 노력을 좀 더 할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게 또 예산이 없으면..못 하는 거잖아요?”(참여자 6)

· “..단기성으로 끝나버리니까...”(참여자 2)

- 아울러, 향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도 내 자녀의 장애 특성 상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이 될지 걱정스럽거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 없음에 따라 이용이 더욱 어렵다고 함

· “서비스가..그냥 정지가 돼요...(중략) 다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뭐 3월부터 해서 8월까지나 9월까지 하고 거기서 정지가 되면 저희가 봄까지 기다려요. 그때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자 3)

· “..(중략)..이거는 아니예요. 서비스를 하나마나인 거예요...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참여자 6)

○ 서비스 이용자 선별로 인한 대상자 탈락 문제 해결

- 예산을 비롯하여 프로그램에서도 대상자 예들들어, 장애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특히 인원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 선별로 인해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함

· “..(중략)..근데 그거도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별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더라고요..(중략)..제가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그 이용자가 정말 말씀처럼 갈 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 모든 기관을 다 두드리고 다녔어요. 시설부터 시작해서. 근데 유일하게 여기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도 솔직히 다양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또 말씀처럼 장애정도와 유형에 막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참여자 3)

· “인원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참여자 4)

· “그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고..”(참여자 2)

○ 장애인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 장애 자녀가 연령이 낮거나, 예민하거나 또는 자폐성향이 강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어린 장애 자녀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함

- “저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솔직히 없었어요.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마음축제라던가 힐링 캠프라는 거를 1회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도 여행을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자폐성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동이 안 되지만 저희는 잘 걸어 다녀요. 하지만 애기가 낯선 곳에 가면 솔직히 가족들도 잠을 잘 수가 없고 구경은 할 수도 없어요. 애기가 너무 예민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축제를 이용하면서 제가 조금 여유는 생겼죠. 그래도 우리 아이가 크면 사실상 갈 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하고는 솔직히 다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폐 성향이 좀 강하다보니까.”(참여자 3)

○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장애 자녀-이용경험이 적은 자녀를 매칭하여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속적 제공 및 확대

-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여기로 이번 주부터 실습을 나왔어요. 센터가 하는 일이랑 그리고 친구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옆에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몰랐었거든요? 근데 학령기에 있을 때는 어쨌든 공교육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 학교 가는 시간에 부모님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정말 갈 데가, 방학 동안에 애랑 같이 있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도 스트레스고 정말 애 하나가 힘들면 온 가족이다 장애가 되는 기분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정말 절대 불가능해요. 신랑이나 저야 뭐 새끼니까 그렇다 치지만 비장애 형제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중략)..그런 성인들을 위한 저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시설 보내는 게 아니라 동네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근처 안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직업이라고 명명하기는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이런 게 정말 바라는 최종 목표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그런 일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중략)..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잘 하는 친구랑 못 하는 친구랑 같이 하나의 조가 돼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워 주기도 하고 정말 안 되는 애들은 나중에 휠체어로 분리수거 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친이랑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세분화해서 한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뭔가는 하나는 하나라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만 정말 위에서 탁상공론적으로 막 그러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와 닿아서 감사했고 정말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면 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정말 할 수 부모들 정말 많아요.” (참여자 5)

○ 비장애 형제 및 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비장애 형제 및 자매 등 자녀를 위한 ‘마음자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예산 지원이 끝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됨. 이에 따라 비장애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음

· “저는 작년에 있었던 마음자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는 뭐 우리 큰 아이가 아프지만 솔직히 형제, 자매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정말 간절하거든요...(중략)..근데 저도 양육하기가 장애아동은 제가 체벌을 한다거나 이러면 애는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는 그런 게 솔직히 먹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는 벌써 감정에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작년에 ‘마음자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도 예산이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형제, 자매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참여자3)

○ 병원에서 장애 자녀 출산 이후 관련 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사 연결 지원

- 참여자들은 병원내에서 장애 자녀 임신 및 출산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원하였음. 즉, 장애 자녀를 출산한 이후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보호(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 등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음에 화를 내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였음
- 이와 함께,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육 방법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를 원하였음

· “그래서 어쨌든 모르고 낳았지만 처음에 병원가가지고 진단받고 막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키우세요,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있으며 무슨 센터에 가고 어딜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중략)..진단만. 근데 어쨌든 병원이고 아니면 병원자체에서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상담해주는 곳이 있던가..”(참여자 6)

· “의사선생님이 이런데, 이런데 가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책상 하나 놓고 상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사 선생님이 한 명 있으면..”(참여자 6)

-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다고 해도 그쪽으로 통화를 하면 연결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참여자 4)

- 이 외에도 장애자녀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복잡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마음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길 바랍

- “..(중략)..마음치료도 좀 해주고, 어쨌든 그런 것도 좀...(중략)..”(참여자 2)

□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여부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

-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여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자들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가 낮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항 대신 위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 어려움 및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으로 대체하여 제시함

4. 소결

□ 기관 일반현황

- 기관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7%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68.3%, 장애인단체 23.2%,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1.2%로 나타남
-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기관소재지를 살펴보면, 남부인 경우가 75.7%, 북부 24.3%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설립된 경우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2010년에 설립된 경우는 33.3%, 2000년~2005년에 설립된 경우는 17.9%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의 상근·계약·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평균 3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37.4%, 없는 경우는 62.6%로 나타나,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 평균 3.1명의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전체 업무량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최소 0%에서 최대 8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8.9%정도라고 응답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주 이용대상을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 50.5%, 2순위는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뇌병변) 42.1%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현황

-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별로 제공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인식개선 사업(5.8%)’, 사례관리사업 중 ‘장애인가족 상담 사업(5.6%)’, 가족역량강화 사업 중 ‘부모교육(5.5%)’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중 ‘사례회의 및 교육(5.2%)’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가족역량강화 중 ‘장애인당사자 멘토링 (0.7%)’, 교육 및 연구사업 중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0.8%)’와 ‘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1.0%)’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돌봄지원과 관련하여, 단기(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1.8%, 주·야간 돌봄 서비스 2.2%, 방과 후 교육/치료서비스의 경우 3.4%의 정도로 나타남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 사업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돌봄지원, 가족휴식(여가)지원, 교육 및 연구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내용별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업의 경우는, 먼저 장애당사자들 대상으로 한 부부 프로그램 6.1%,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프로그램도 3.8%, 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6.4%, 부모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도 3.8%, 가족나들이 5.4%, 가족캠프 10.0%, 동아리 활동지원 13.4%,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4.4%, 법률지원 7.3%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1순위는 가족역량강화 사업, 2순위는 사례관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다른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다는 경우가 61.4%, 없다는 경우는 38.6%인 것으로 나타남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연계 및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의뢰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66.7%), 지역 내 의뢰 및 연계할 자원이 없어서(14.5%)로 나타났으며,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61.7%), 우리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29.6%) 연계 및 의뢰한 것으로 나타남
-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연계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 12.6%, 장애인복지관 10.6%,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의료

기관은 각각 6.7%의 순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6%, 주민센터 등 관공서 6.6%, 의료기관 6.4%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우선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1순위 아동기 28.4%, 2순위 영유아기 22.7%로 나타남
-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유형은 1순위 발달장애인(48.6%), 2순위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장애(25.2%)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1순위 인력의 전문성 강화(26.3%), 2순위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25.5%)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몰랐다 또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조사연구사업(80.0%), 교육사업(72.0%),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70.8%), 장애인 가족지원(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70.8%), 지역사회조직사업(60.4%)에서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하였음. 이에 반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16.7%),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13.0%),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7%),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8.3%)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조직사업(75.0%),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75.0%)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발달

-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사업 등에서 ‘그저 그렇다(50.0%)’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평균 6.9명을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9.2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별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두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예. 4개 권역)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56.0%),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복지 서비스 격차(56.0%),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56.0%),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수의 증가(52.0%)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역시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75.0%),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50.0%)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이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환경적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66.7%), 장애인종합복지관(68.2%), 장애인종별복지관(83.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66.7%) 모두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75.0%)이 높게 나타나 다른 기관 응답자들과 상반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지역센터가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문성 강화(46.4%)’, ‘다양한 욕구에 대응

(25.0%)’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응(55.6%)’,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전문성 강화(53.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성 강화(46.7%)’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 각각 33.3%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

- 시·군 지역센터가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32.1%)’, ‘관리의 효율성(29.5%)’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 각각 41.2%, 36.7%, 21.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단독운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군 지역센터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8.9%), 가족역량강화사업(88.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8.9%), 지역사회조직사업(66.7%)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광역센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역량강화사업(66.7%)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양육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에서 각각 66.7%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군 지역센터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필요정도에 대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역량강화사업(70.65%),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64.7%)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반해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도 단위 행사에서는 62.2%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시·군 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는 평균 8.0명 정도의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시·군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군 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평균 8.0명)은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평균 9.2명)과 비교해 볼 때 1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에 대하여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으로 여성(72.5%), 연령대는 30세~39세인 경우(45.5%), 학력은 대학교 졸업(64.3%), 전공분야는 사회복지(83.4%), 근무경력은 3년 이상~5년 미만(30.5%), 직급은 사무국장, 직무대리, 간사, 국장, 시설장, 실장, 주임, 팀장, 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IV. 운영 모형(안)

IV 경기도 광역·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안)

1. 광역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모형(안)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방안 논의

- 최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 기능의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시·군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함),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맞물려 센터 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수행 여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집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려는 논의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에서는 먼저, 기존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에 충실하며, 광역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모형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장애인 가족 지원)
 - 2017년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제30조 2, 장애인 가족 지원)’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 운영

□ 대상

-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우선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1순위 아동기(28.4%), 2순위 영유아기(22.7%)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원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유형은 1순위 발달장애인(48.6%), 2순위 외부신체기능(지체, 뇌병변)장애(25.2%)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아동기, 영유아기의 장애인가정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
 - 센터장의 총괄아래 ①가족상담팀, ②가족지원·역량강화팀, ③인식개선(지역사회 팀) 및 교육연구팀, ④운영지원팀으로 조직 구성하여 총 4개팀으로 운영
 - 단, 운영지원팀의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팀과 통합 운영 가능(필요시 센터장이 팀장 겸임 가능)
 - 본 연구에서 원활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예. 4개 권역)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역시·도 센터의 추가 설치 고려가 필요하며 추가 설치가 힘든 경우,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할당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력구성
 - 센터장, 팀장, 팀원 즉,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부서원들이 업무

를 수행. 즉, 장애인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상담 등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1순위 인력의 전문성 강화(26.3%), 2순위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25.5%)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평균 6.9명)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7.6명 정도의 인력이 광역기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센터장 1인, 팀장 3명, 팀원 6명으로 총 9명의 인력을 제안함

<그림 IV-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안)



주: 운영지원팀 :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팀과 통합 운영 가능

<표 IV-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자격기준(안) 등

기관	구분	자격기준(안)	인원	
			현재 (지역)	변경 (안)
광역 시·도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센터장	· 센터장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모 법인이 임명 · 유관기관(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종사 경력 8년 이상 또는 유관 학문 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유자 ※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고려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임명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근 센터장일 경우 팀원은 1명 더 추가하여 두어야 함.	1명	1명
	팀장	· 유관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유관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하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	1명	3명
	팀원	· 유관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유관기관 종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유관 학문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 및 졸업예정자 ·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하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	2명	5명

□ 사업 내용

- 광역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즉,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함
- 본 연구에서 경기도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한 사업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조사연구사업(80.0%), 교육사업(72.0%),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70.8%), 장애인 가족지원(특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70.8%), 지역사회조직사업(60.4%)에서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하였음.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조직사업(75.0%),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75.0%)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라고 응답하였음
- 이에 따라 주요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 연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업, 장애인가족 대상 가족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장애인 가족지원 특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밖에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 지역

사회조직 사업,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 등을 중심으로 수행함. 구체적인 각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V-2> 광역시·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변경(안)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제외

구분	사업내용	비고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관리, 대표 · 정부와 시군센터와의 중재역할	공통
가족상담팀	·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문제 상담지원(예 :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 장애인가족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휴식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뢰·연계	장애인 가족
가족지원·기능강화팀	·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 위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등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 - 장애인 가족지원 특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가족
인식개선 및 교육연구팀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장애인식 개선사업,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연구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센터 직원 교육을 비롯한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조직사업(예 : 자원봉사자 교육) 등 · 지역사회조직 사업 -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 지역자원 개발	장애인 가족
운영지원팀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통계관리 등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과 총괄관리 · 장애인 가족 관련 도 단위 행사 지원 · 센터 운영 업무(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공통

2.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독립적 운영(독립형)

□ 독립형의 경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분리하여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단독운영하는 것임. 발달장애인 대상의 관련 사업은 (시·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 및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정 하에 논의하고자 함

- 이 경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최근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 그리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설치 근거를 두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2017)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 운영 방안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 즉,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본 연구에서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에만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75.0%)이 높게 나타나 다른 기관 응답자들이 제시한 유사기능 기관과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임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연계하도록함

□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장애인 가족 지원) 예정
 - 2017년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제30조 2, 장애인 가족 지원)’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 운영

□ 대상

-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시·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 및 연계하도록 함

□ 조직 및 인력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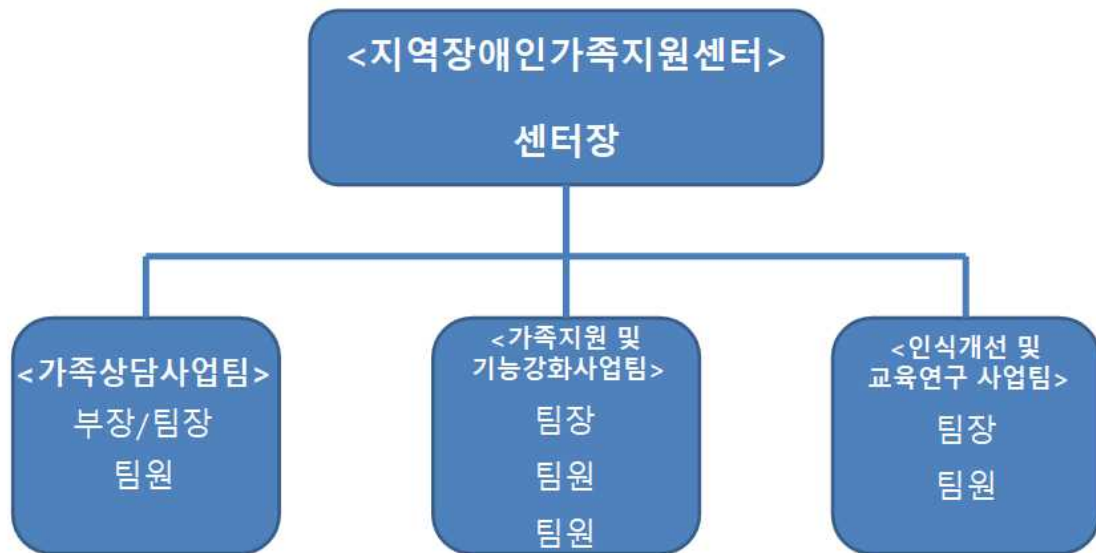
○ 조직

- 센터장의 총괄아래 ①가족상담사업팀, ②가족지원 및 기능강화사업팀 ③인식개선 및 교육연구 사업팀(인식개선사업, 교육연구·기타사업 2종으로 분류 가능)으로 이루어진 총 3개팀으로 운영
- 단, 운영지원팀의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팀과 통합 운영 가능(필요시 센터장이 팀장 겸임 가능)

○ 인력구성

- 센터장, 팀장, 팀원 즉,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부서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되 장애인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상담 등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시·군 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센터장 제외) 수는 평균 7.1명 정도로 나타남
-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독립형의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인력(발달장애인사업 제외)은 센터장 1인, 팀장 2명(운영지원팀 1명 센터장 겸직 가능하므로 제외), 팀원 4명으로 총 7명의 인력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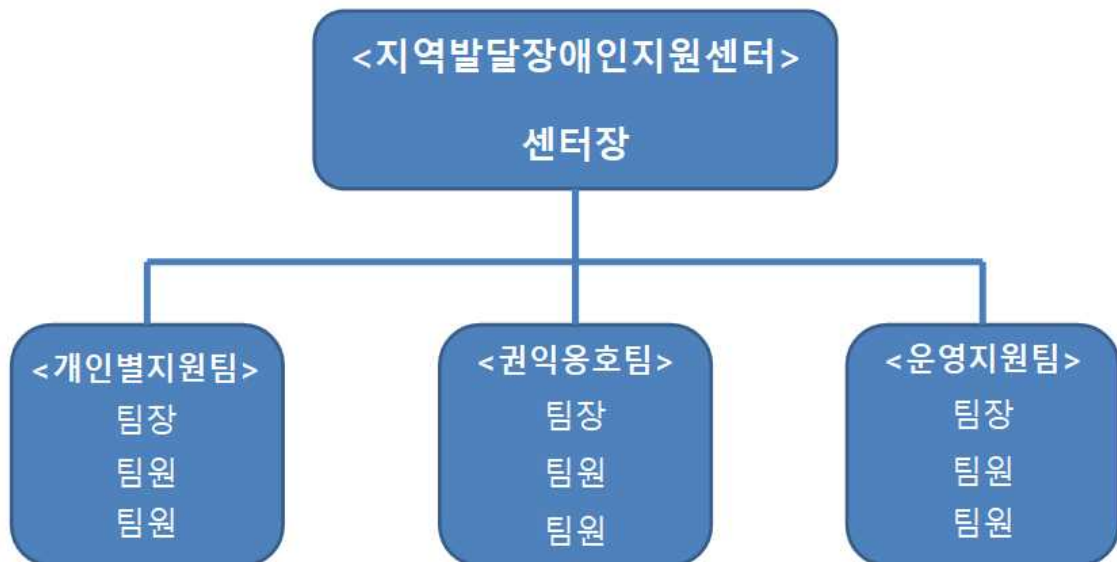
<그림 IV-2> 독립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안)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팀(예.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정보제공,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업무 수행 등) 제외

* 운영지원팀 :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팀과 통합 운영 가능(센터장 겸직 가능)

<그림 IV-3> 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¹⁾



1) 보건복지부,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내용에 따라 도식화 한 자료임.

<표 IV-3> 독립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자격기준(안)

기관	구분	자격기준(안)	인원	
			현재	변경(안)
시·군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센터장	· 센터장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모 법인이 임명 · 유관기관(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종사 경력 8년 이상 또는 유관 학문 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유자 ※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고려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임명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근 센터장일 경우 팀원은 1명 더 추가하여 두어야 함	1명	1명
	팀장	· 유관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유관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하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	1명	2명
	팀원	· 유관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유관기관 종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유관 학문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 및 졸업예정자 ·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하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	2명	4명

□ 사업 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제30조 2, 장애인 가족 지원)’이 통과·시행되는 상황임
- 따라서, 독립형의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즉,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되, 기존에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원사업(예.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 조기발견 및 정보제공 등)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연계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단독운영될 경우, 수행되어야 할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사업(88.9%), 가족역량강화사업(88.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88.9%), 지역사회조직사업(66.7%)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광역센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 연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광역센

터와 연계)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업, (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 대상 가족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직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됨. 구체적인 각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V-4> 독립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을 분리한)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²⁾

구분	사업내용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관리 · 광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가족상담팀	·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문제 상담지원(예 :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사업 · 장애인가족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뢰·연계
가족지원·기능강화팀	·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예, 장애인가족 캠프, 문화예술지원 등) ·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 위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등 ·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 -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사업, 부모교육 - 장애자녀의 성인기 준비를 위한 부모 자조모임 등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시행
인식개선 및 교육연구팀	· (광역센터와 연계) 지역사회조직사업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장애인식 개선사업(예: 토크콘서트 등),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광역센터와 연계) 시군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연구 · (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센터 직원 교육을 비롯한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조직사업(예 : 자원봉사자 교육) 등

※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예, 개별지원계획수립,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정보제공, 미아방지 서비스, 당사자 자조모임 등)은 실시하지 않고,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후 의뢰·연계하도록 함

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에 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IV-5>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독립형’ 사업내용

구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독립형’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분리)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 위탁형 - 민간 위탁형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독 독립적으로 운영
관련 법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사업내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장애인 가족 지원) 예정 - 2017년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제30조 2, 장애인 가족 지원)’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례 등을 통해 사업
설립배경 및 목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 즉,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됨.
대상	·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 및 연계하도록 함.
추진체계	· 경기도 · 시·도 및 시·군 · 수탁기관
재정지원 (재원 조달 방식)	· 경기도, 시·군 예산 지원
조직 및 인력구성	· 센터장의 총괄아래 총 3개팀으로 운영 ① 가족상담사업팀 ② 가족지원 및 기능강화사업팀 ③ 인식개선 및 교육연구 사업팀 (인식개선사업, 교육연구·기타사업 2종으로 분류 가능)
인력구성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인력(발달장애인 사업 제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함 · 센터장 1인, 팀장 2명(운영지원팀 1명 센터장 겸직 가능하므로 제외), 팀원 4명으로 총 7명의 인력을 제안함
사업내용	·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 장애인가족 관련 조사 연구(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광역센터와 연계),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업, 장애인가족 대상 가족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광역센터와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주로 직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V. 제 언

V 제언

□ 합리적인 수준의 센터 예산 지원

- 각 지역별 센터의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 및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갖고 있음
 - 당해년부터 예산이 상근 직원수 1인당 5,000만원으로 책정하여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의 7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 이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되는 센터가 발생하며, 직원 인건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
- 인력 부족 문제
 - 시·군 센터의 경우 2~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점차 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적정 인력으로 충원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존재
- 공간의 부족 및 시설 설비 문제 등이 존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일부 기관은 장애인 화장실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등 장애인 관련 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속에서 운영되기도 함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 필요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정시설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기관으로, 전 직원이 타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
 -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비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며, 이직 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함

-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도 있으나 일부에 불과
 - 시·군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당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더라도 시·군 관계자 등의 의지에 따라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
- 하지만 법제화가 된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기관에 미달될 상황이므로, 법제화를 위한 과정과 더불어 법적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각 시·군 및 센터 차원의 노력 필요함

참고문헌

- 이병화, 김성연, 이선정, 곽유나(201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 보건복지부(2017).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 법제처 <http://www.law.go.kr>

부 록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 연구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현재 장애인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식과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생성된 자료는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승희 (삼육대학교 외래교수)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작성방법	기관 당 5부 작성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담당자 포함)
회신방법	2017. 4. 6.(목)까지 이메일 또는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vepark@ggwf.or.kr
조사표 문의	박예은(☎031-267-9384)

A. 기관 일반현황

1. 기관유형	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② 장애인종합복지관 ③ 장애인종별복지관 (① 지체 ② 지적장애 ③ 시각 ④ 청각 ⑤ 뇌병변) ④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I센터)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⑥기타(직접 기입) _____			
2. 운영주체	①장애인단체 ②(사회복지)법인 등 ③개인운영 ④지역자치단체 ⑤기타 ()			
3. 기관소재지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㉑ 연천군 ㉒ 오산시 ㉓ 용인시 ㉔ 의왕시 ㉕ 의정부시 ㉖ 이천시 ㉗ 파주시 ㉘ 평택시 ㉙ 포천시 ㉚ 하남시 ㉛ 화성시			
4. 설립시기	_____년 _____월			
5. 전체 직원수 (상근계약임사직 포함)	약 _____명			
6.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유무 * 전담인력이란 담당업무가 100%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인 경우를 의미함	①있음 ➡ 6-1번 문항으로 ②없음 ➡ 6-2번 문항으로	6-1.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 7번 문항으로 6-2. 전체 업무량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_____% * 응답자 개인이 아닌, 기관 전체 직원에 대한 업무비중을 기재 ➡ 7번 문항으로		
7.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주 이용대상	1순위		2순위	
	①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②정신적장애(정신, 뇌전증) ③신체장애(뇌병변, 지체, 안면) ④감각장애(시각, 청각) ⑤언어장애 ⑥내부기능 장애(신장, 심장, 간, 장루요루, 호흡기)			
8.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이용자수 (중복포함)	연인원 약 _____명 실인원 약 _____명			

B. 기관의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현황

9.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각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9-1문항은 현재 제공하는 모든 사업에 “√”해주시고, 9-2문항은 제공여부와 같이 없이 모두 응답해주시요.)

가족지원사업		9-1. 제공 여부	9-2.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사례 관리	①장애인가족 상담					
	②위기장애인가족 발굴 및 사례관리					
	③사례회의 및 교육					
	④솔루션회의					
	⑤발달장애인부모 전문심리상담					
	⑥찾아가는 상담					
	⑦기타()					
가족 역량 강화	⑧부모교육					
	⑨장애인부모훈련프로그램					
	⑩부부프로그램	장애인당사자 대상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⑪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⑫자조모임 지원	장애인당사자 대상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⑬넌토링 프로그램	장애인당사자 대상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돌봄 지원	⑭발달장애인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⑮기타()					
	⑯단기(긴급)돌봄 서비스 * 필요 시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보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⑰주야간 돌봄 서비스 * (정기적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⑱방과 후 교육/치료					
	⑲기타()					

가족지원사업		9-1. 제공 여부	9-2.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가족 휴식 (여가) 지원	㉔가족나들이					
	㉕가족문화지원					
	㉖가족캠프					
	㉗동아리 활동 지원					
	㉘기타()					
교육 · 연구 사업	㉙장애인인식개선 사업					
	㉚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연구					
	㉛장애인가족 관련 조사사업					
	㉜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㉝장애인가족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㉞장애인 가족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					
	㉟기타()					
기타	㊱법률지원					
	㊲장애인 이동 지원					
	㊳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가사보조활동					
	㊴기타()					

10. 귀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①사례관리

②가족역량강화

③돌봄·양육지원

④가족휴식(여가)지원

⑤교육·연구 사업

⑥기타()

11. 최근 1년 간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없다 ➡ 11-1번 문항으로

②있다

↓ 11-2번 문항으로

11-1 (11번 문항에 ①로 응답한 경우) 타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의뢰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②지역 내 의뢰 및 연계할 자원이 없어서
 ③의뢰하고자 했던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④이용자가 원치 않아서
 ⑤기타()

➡ 12번 문항으로

11-2. (11번 문항에 ②로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떤 사유로 연계하였습니까?

- ①우리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 위해
 ②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③민원 및 분쟁이 발생해서
 ④기타 ()

11-3. (11번 문항에 ②로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떤 기관에 연계하였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 | | | |
|----------------|--------------|--------------|------------|
| 사회
복지
시설 | ①중합사회복지관 | ②노인복지관 | ③장애인복지관 |
| | ④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⑤장애인가족지원센터 | ⑥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⑦장애인의료재활시설 | ⑧재활공학지원센터 | ⑨특수교육지원센터 |
| | ⑩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 ⑪장애인단기보호시설 | ⑫장애인생활시설 |
| | ⑬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⑭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⑮정신요양시설 |
| | ⑯아동상담소 | ⑰건강가정지원센터 | ⑱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⑲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⑳성폭력피해보호시설 | ㉑가정폭력보호시설 |
| | ㉒성매매피해지원시설 | ㉓기타() | |

- | | | | |
|----------------|--------------|-------|----------|
| 근린
생활
시설 | ㉔관공서(주민센터 등) | ㉕경찰서 | ㉖소방관계 기관 |
| | ㉗의료기관 | ㉘교육기관 | ㉙문화체육시설 |
| | ㉚기타() | | |

➡ 12번 문항으로

12.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어떤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고르세요.

사회 복지 시설	①종합사회복지관	②노인복지관	③장애인복지관
	④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⑤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⑥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⑦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⑧재활공학지원센터	⑨특수교육지원센터
	⑩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⑪장애인단기보호시설	⑫장애인생활시설
	⑬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⑭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⑮정신요양시설
	⑯아동상담소	⑰건강가정지원센터	⑱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⑲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⑳성폭력피해보호시설	㉑가정폭력보호시설
	㉒성매매피해지원시설	㉓기타(_____)	
근원 생활 시설	㉔관공서(주민센터 등)	㉕경찰서	㉖소방관계 기관
	㉗의료기관	㉘교육기관	㉙문화체육시설
	㉚기타(_____)		

13. 귀하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어떤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영유아기 ②아동기 ③청소년기
④성인초기(20-40세) ⑤성인중기(40-60세)

14. 귀하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어떤 장애인 가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②정신적장애(정신, 뇌전증)
③신체장애(뇌병변, 지체, 안면) ④감각장애(시각, 청각)
⑤언어장애 ⑥내부기능 장애(신장, 심장, 간, 장루요루, 호흡기)

①인력확충 ②인력의 전문성 강화
③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및 자원 개발 ④접근성 제고
⑤대상자 발굴 및 홍보 ⑥기타 ()

질문 문항	1	2	3	4	5
(13)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					
(14) 기타()					
(15) 기타()					

18. 상기 문항(17번)에 응답하신 광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인력(팀장 포함) 약 _____명
관리 인력(센터장 포함) 약 _____명

19.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역센터의 적정 설치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지(남부, 북부 2개소) ②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4개 권역)
③ 기타 ()

20.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또는 사회 환경적 요소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방법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5 (매우 필요하다) ☞ 문항별로 해당 점수 칸에 ○ 표를 체크해 주십시오.
------	---

질문 문항	1	2	3	4	5
(1) 장애등급제 개편					
(2) 발달장애인법 시행(지역발달장애인센터 설치 등)					
(3) 도(道)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수의 증가					
(4) 발달 장애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다양화					
(5)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					
(6)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7)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강조					
(8) 기타 ()					
(9) 기타 ()					

21. 기타 광역센터로서 사업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문항	1	2	3	4	5
(12)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정보제공)					
(13)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DB(장애인가족종합정보) 구축					
(14) 기타()					
(15) 기타()					

25. 상기 문항(24번)에 응답하신 지역기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몇 명입니까?

사업 인력(팀장 포함) 약 _____명

관리 인력(센터장 포함) 약 _____명

26.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시군)센터의 적정 설치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각 시군 당 1개소

② 지역 특성(접근성, 복지인프라 등)에 따라 차등 설치

③ 기타 ()

27. 기타 지역센터로서 사업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_____세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졸 ⑤ 박사졸		
전공분야	① 사회복지 ② 특수교육 ③ 치료분야(물리·언어·작업치료 등) ④ 행정 ⑤ 기타 ()		
근무경력	_____ 년 _____개월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근무경력)		
직급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